



2017년 기초생활보장
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
11월부터 신청하세요!



노인, 장애인가구를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.

신청방법: 읍·면·동 주민센터 신청 시기: 2017년 11월 1일부터

지원 대상 < 더 넓어진 “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지원”

소득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,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(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)

소득 인정액 기준

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소득인정액 = 소득인정액이 소득으로 평가 환산한 금액

구분	선정기준	기준액(원)					
		1인 가구	2인 가구	3인 가구	4인 가구	5인 가구	6인 가구
교육급여	기준중위소득 50% 이하	826,465	1,407,225	1,820,457	2,233,690	2,646,923	3,060,155
주거급여	기준중위소득 43% 이하	710,760	1,210,213	1,565,593	1,920,973	2,276,353	2,631,733
의료급여	기준중위소득 40% 이하	661,172	1,125,780	1,456,366	1,786,952	2,117,538	2,448,124
생계급여	기준중위소득 30% 이하	495,879	844,335	1,092,274	1,340,214	1,588,154	1,836,093

기준중위소득이란?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함

지원 대상 < “노인, 장애인 가구”를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욱 완화

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

부양의무자 기준

부양의무자가 없거나,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

부양의무자의 범위

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,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(아들·딸 사망시, 며느리·사위는 제외)

올해 11월부터 다음 두 조건(①,②) **동시** 충족할 경우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

- ① 수급자: 노인 또는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1.2.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
- ② 부양의무자: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*을 포함한 가구

*20세 이하인 경우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1.2.3급(3급은 중복) 중증장애인

지원 내용 < 급여 항목별 체계적인 지원

소득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,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(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)

생계/의료/주거/교육 급여 상세 내용

- 01. 생계급여**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해 드립니다.
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원합니다.
- 02. 의료급여** 질병, 부상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의료급여 본인부담	구분		1차 (의원)	2차 (병원, 종합병원)	3차 (지정병원)	약국
	1종	입원	없음	없음	없음	-
		외래	1,000원	1,500원	2,000원	500원
	2종	입원	10%	10%	10%	-
		외래	1,000원	15%	15%	500원

- 1종** 근로무능력가구, 결핵질환자, 희귀난치성·중증질환 등록자, 시설수급자
- 2종**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

